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"허가"사항을 "신고"로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제16조제목, 제16조제1항, 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7조제목, 제17조제1항, 제19조제1항중 "허가"를 "신고"로 한다

나. 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, 제20조제3호, 제22조중 "허가"를 "신고수리"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목, 제16조제1항, 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7조제목, 제17조제1항, 제19조제1항중 "허가"를 "신고"로 한다

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항제3호, 제17조제2항, 제20조제3호, 제22조중 "허가"를 "신고수리"로 한다.

제16조제1항중 "허가를 받아야"를 "신고를 하여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사용허가)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<u>허가</u>를 받아야 한다. <u>허가</u>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<u>사용허가</u>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1년내로 한다.</p> <p>③<u>사용허가</u>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.</p> <p>④<u>사용허가</u>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<u>허가</u>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<u>사용허가</u>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<u>허가</u>의 취소등)①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<u>허가</u>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,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사용허가</u>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</p> <p>3.~4.(생략)</p> 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<u>사용허가</u>의 취소, 제한 정지 또는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19조(사용료 징수)①사용료는 <u>사용허가</u>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.</p> <p>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(생략)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<u>허가</u>를 취소한 때</p> <p>제22조(권리양도등의 제한) 제16조에 의하여 <u>사용허가</u>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16조(사용신신고) ① <u>신고를 하여야</u> <u>신고</u> ② <u>신고수리</u> ③ . . <u>신고</u> ④ . . <u>신고</u> <u>신고</u> ⑤ . . <u>신고</u></p> <p>제17조(<u>신고</u>의 취소등)① . . <u>신고</u> <u>신고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. . <u>신고수리</u> 3.~4.(현행과 같음) ② <u>신</u> <u>고수리</u></p> <p>제19조(사용료 징수)① <u>신고</u> </p> <p>제20조(사용료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 1.~2.(현행과 같음) 3. . . <u>신고수리</u> <u>신고수리</u></p> <p>제22조(권리양도등의 제한) <u>신고수리</u></p>